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69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허 영 · 김승원 · 박 정  
이해식 · 서삼석 · 한민수  
문진석 · 홍기원 · 박상혁  
소병훈 · 김태선 · 김영환  
정진욱 · 박용갑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을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1호의2”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② ~ ⑥ (생략)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과 같음)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  
-----  
-----  
---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  
-----  
-----

를 준용한다.

② ~ ⑤ (생략)

제43조(과태료)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삭제

③ ~ ⑧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제1호, 제1호의2-----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⑧ (현행과 같음)